

서울형 키즈카페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(잠실근린공원점) 재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

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, 제53조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서울형 키즈카페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(잠실근린공원점)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6. 4. 7.

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

1. 위탁사무명: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(잠실근린공원점) 재위탁 운영 및 관리

2. 위탁기간: 위·수탁계약일로부터 3년

※ 위탁기간은 위탁기관 선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3. 위탁운영 개요

가. 위탁대상 시설

시 설 명	전경	소 재 지	시 설 규 모	정원	운영 인력	이용 대상	개 관 일	'26. 보조금
서울형키즈카페 하하호호놀이터 1호점 잠실근린공원점		백제고분로 15길 9 (잠실본동)	규모: 지상1층~ 지상2층 면적: 474.65㎡	45명	5명	4세 ~ 9세	24. 5. 30.	278,896천원 시 163,657천원 구 115,239천원

나. 시설 운영

- 운영시간: 매주 화~일요일[주6일 운영/ 월요일 휴무], 9:00~18:00
※ 단, 이용자의 수요증가 등에 따른 사유로 운영회차 및 이용정원 조정 등 발생 할 경우 변경 가능
- 이용대상: 4~9세 및 부모 등 보호자
- 이용정원: 회차별 45명

다. 위탁내용 :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(잠실근린공원점) 재위탁 운영·관리 사무 전반

- 조직·인사관리, 예산집행 및 회계, 물품·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·안전관리
-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
- 놀이돌봄 서비스 수행
- 놀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기타 시설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라. 위탁사업비 : 연278,896천원(2026년 기준)

138,848천원 ('26년 하반기 7월~12월 보조금 기준)

○ 시비: 81,229천원, 구비: 57,619천원

- ※ 직원 고용승계 원칙(5명 중 4명, 돌봄요원 1명-재위탁 전 계약 만료예정)
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센터장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으나,
향후 수탁 운영시 기존 계약 만료 예정인 돌봄요원을 시설장으로 채용 가능
(총원 - 시설장 포함 5명으로 변동불가)
- ※ 인건비, 시비 보조비율 등에 따라 위탁사업비는 변동 가능성 있음

4.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가. 공고기간: 2026. 4. 7.(화) ~ 4. 27.(월) [20일]

나. 접수기간: 2026. 4. 21.(화) ~ 4. 27.(월) [7일]

다. 접수방법: 방문제출(우편·택배·인터넷제출 불가)

라. 접수장소: 송파구 올림픽로 326(송파구청 5층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)

마. 제출서류: 신청서류 일체 9부(원본 1부, 사본8부), 발표자료(PDF)

- ※ (붙임)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'작성방법' 참조
- ※ 서류 순서대로 A4용지에 양면 좌우 인쇄하여 1권(쪽번호 명시 필수)으로 편철, 항목별 구분 견출지 부착
- ※ 발표자료에 한하여 이메일(seon714@songpa.go.kr) 제출

바. 사업설명회: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내용으로 같음

사. 문 의 처: 송파구청 여성보육과(02-2147-2719)

5.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가. 신청자격

- 공고일 기준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, 경기도 소재로
- 접수 마감일 기준 면허·허가·등록 또는 지정취소, 휴·폐업, 업무정지,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고,
- 놀이터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를 갖추고 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역량 있는 비영리 법인·단체

※ 세부수탁자격 및 수탁제외대상

【세부 수탁자의 자격】	
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	
•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	
• 개별법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	
-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	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	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4조제2항에 사회적협동조합	
•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	
【신청제외대상】	
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	
•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	
•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	
•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	
•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	
•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	

나. 유의사항

- 1)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2)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심의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그 자격이 상실됨
- 3) 송파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출서류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때 입증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

6.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

가. 심사기준

대항목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
공신력 및 전문성 (40점)	법인·단체 유형 및 설립목적	• 법인·단체 유형 및 설립목적의 수탁업무 적합성	5
	대표 및 이사회 적합성	• 대표의 시설 운영 의지 및 전문성 • 이사회 구성·운영 적정성	10
	수탁업무 관련 운영실적	• 수탁업무 관련 시설 운영실적	15
	사업수행 역량	• 법인·단체의 법적·도덕적 건전성 • 사무소, 상근인력 적정성 • 수상·공모 실적	10
재정 능력 (20점)	재정 안정성	• 자산 보유 현황 • 수입재원 현황 및 안정성	5
	재정부담 적정성	• 자부담 계획 • 법인·단체 재원 조달계획	5
	회계 투명성	• 회계감사 실적 • 재무회계규칙 준수 내역	10
사업 능력 (40점)	시설 운영 계획 적정성	• 세부 운영계획 • 예산계획	20
	조직 관리 계획 적정성	• 조직 운영 계획 • 인사관리 계획 • 지역자원 활용 방안	10
	안전관리 계획 적정성	•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•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• 이용자 안전관리 계획	10

나. 심사방법

- 1)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(최고·최저 점수 제외)하여 평균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최고점수 득점 법인(단체)을 1순위로 함
※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(부적격 처리된 신청자는 참여불가)
- 2)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공신력,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순으로 결정
- 3) 1순위자가 수탁포기할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차점자 순으로 수탁자를 선정
- 4) 신청법인(단체)가 1개일 경우 재공고(5일간)를 1회 시행하고, 재공고 결과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 신청법인(단체)에 대한 심의 실시

7. 심사일시 및 협약체결

가. 심사일시 및 발표

- 1) 일 시: 2026. 5. 13.(수) (예정) ※일정 변동시 개별 통지
- 2) 장 소: 송파구청 3층 기획상황실
- 3) 발표내용: 신청서류 브리핑, 운영의지, 비전제시 등 7분 내외 제안설명
- 4) 발표순서: 신청서 접수 순(1번 접수자가 가장 먼저 발표)
- 5) 심사위원: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추후 별도구성
- 6) 선정결과: 2026. 5월 중 송파구청 홈페이지 게재 ※미선정자 개별통지 없음
※ 신청서 및 사업제안안내서 등은 별도 배부하지 않으므로 송파구 홈페이지(www.songpa.go.kr) 고시/공고 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협약체결

- 1) 일 시 : 2026. 6월 중 ※선정된 법인(단체)와 세부일정 협의
- 2) 방 법 : 지정된 기일까지 위·수탁계약서에 따른 협약체결

다. 수탁기관 이행사항

- 1)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(잠실근린공원점)의 원활한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, 관련 법규, 조례, 운영지침 및 서울형 키즈카페 가이드라인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- 2)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(잠실근린공원점)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선량하게 추진하여야 하며, 추진 시 송파구에 유·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
- 3) 위탁시설과 법인(단체)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며, 위탁시설 종사자는 해당 시설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
- 4)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·대여·재위탁 할 수 없음
- 5) 시설은 정치활동,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
- 6) 운영계획의 결정·변경 등 주요사항은 송파구와 협의하여 결정
- 7) 종사자 신규 채용 시 송파구에 사전 통지,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발
- 8) 수탁기관에서는 대표 및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, 폭언, 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교육 실시
- 9) 「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임하여야 함
- 10) 기타 상세한 위탁 조건은 위·수탁 협약으로 정함

- 붙임 1.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안내 1부.
2. 제출서식 1부. 끝.